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의결사항

산 림 보 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나이 제한을 삭제하여 지침에서 정하도록 하고,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사태현장예방단 나이 제한 삭제(안 제32조의13)

-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나이 제한(만 20세 이상)을 삭제하여 지침에서 정하도록 함

나.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기준 강화(안 별표 3의 2)

-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산사태 예측정보의 발생 비율 조정을 통해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13제2항 중 “만 20세 이상인”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주의의 발령기준란 중 “30%”를 “15%”로 하고, 같은 표 경계의 발령기준란 중 “50%”를 “30%”로, 같은 란 중 “30%”를 “15%”로 하고, 같은 표 심각의 발령기준란 중 “50%”를 “30%”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1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③ ~ ⑤ (생 략) 별표 3의 2 <별지와 같음>	제32조의1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관할 ----------. ③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3의 2 <별지와 같음>

[별표 3의 2] 신 · 구 대비표

현 행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3의2]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제32조의6제4항 관련)

구분	발령기준	조치기준
관심	(생 략)	(생 략)
주의	ㅇ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30%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ㅇ지진 규모 4.5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생 략)
경계	ㅇ중·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50%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30%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ㅇ지진 규모 5.0 ~ 5.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심각	ㅇ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ㅇ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50%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ㅇ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생 략)

<비고> 생략

개 정 안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3의2]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제32조의6제4항 관련)

구분	발령기준	조치기준
관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의	ㅇ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15%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ㅇ지진 규모 4.5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현행과 같음)
경계	ㅇ중·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30%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15%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ㅇ지진 규모 5.0 ~ 5.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심각	ㅇ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ㅇ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30%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한 경우 ㅇ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연 락 처	(042) 481 - 8844